



---

#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검토

---



2020. 3.

#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분석 및 검토

## □ 지정요건 분석

유형	지정요건	분석결과	지정기준	충족여부
Type A	①구미 증감률: 0.8% 감소 - 신청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: 105,179명 - 그 전 1년간 평균 비보험자수: 105,986명	전국 대비 4.6%p 낮음	전국 평균보다 5%p 이상은 우	충족 안됨
	②전국 증감률: 3.8% 증가 - 신청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: 13,726,369명 - 그 전 1년간 평균 비보험자수: 13,224,577명			
	③전국 대비 4.6%p 낮음			
Type A	①신청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: 105,179명	0.8% 감소	5% 이상 감소	충족 안됨
	②그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: 105,986명			
	③증감률: 0.8% 감소			
Type A	①신청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: 66,013명	24.2% 증가	20% 이상 증가	충족
	②그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: 53,167명			
	③증감률: 24.2% 증가			
Type B	①신청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: 105,179명 ②그 3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: 104,681명 ③감소률: 0.5% 증가	0.5% 증가	7% 이상 감소	충족 안됨
Type C	지역내 공장 이전 또는 폐업 계획 발표 등 대규모 고용조정이 예상	해당 사항 없음	-	-

⇒ 구미시는 Type A, B, C 모두 충족하지 못함

## □ 종합검토

- 구미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어, 고용위기 지역 지정 신청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
- '14년 이후 구미시 전체 피보험자수는 증가추세이나 지역 주력업종인 전자부품 업종의 피보험자수는 지속적으로 하락
  - 전자부품 업종의 고용감소를 지역내 타산업의 고용증가로 이를 상쇄
    - \* 구미시 전체 연평균 피보험자수 : ('14년) 104,713명 → ('19년) 105,031명
    - \* 전자부품/통신장비 제조업 연평균 피보험자수 : ('14년) 22,060명 → ('19년) 15,745명
- 지역의 기존 주력업종과 대체업종의 변화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고, 그 변화에 적합한 지역산업 육성전략 수립이 필요

## [참고자료 1] 구미시 피보험자수 및 구직급여 신청자수 현황

구 분		'16.2. ~ '17.1.	'17.2. ~ '18.1.	'18.2. ~ '19.1.	'19.2. ~ '20.1.
월평균 피보험자수(명)	구미	104,681	105,819	105,986	105,179
	전국	12,541,865	12,845,656	13,224,577	13,726,369
연간 구직급여 신청자수(명)	구미	50,624	43,827	53,167	66,013
	전국	4,572,493	4,617,341	5,199,728	5,741,592

\* 자료: 고용행정통계(<https://eis.work.go.kr/index.do>)

## [참고자료 2]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

[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(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-20호)]

제4조(지정기준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지역이 다음 제1호에서 제3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거나, 제4호 또는 제5호의 기준을 갖춘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경제·산업·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산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한 때로 한다.

1. 고용보험 피보험자(이하 "피보험자"라 한다) 증감률(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와 그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)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 보다 5%p 이상 낮은 경우
2.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그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100분의 5 이상 감소한 경우
3.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그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
4. 고용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그 3년 전 1년간의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7% 이상 감소한 지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5. 지역 내 공장 이전 또는 폐업 계획 발표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예상되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